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의 현황과 과제

이 제 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장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

본 브리핑은 기부금품법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분야 후원(민간 기부)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2023년 기부금품 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 속에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기부금품 관련 제도적 환경과 문화예술분야

우리나라의 기부금품 관련법과 제도는 규제에서 활성화로 변화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1951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거쳐 2005년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정착되어, 기부금품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재원 중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금니아빠 사건, 새희망씨앗 사건 등 기부금품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표 1),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기부금품 정책은 여전히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도 국민인권과 관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이 포함되었으나 실질적 시행 내용은 회계정보 공개, 관리감독 강화 등 투명성 제고가 주된 내용이었다.

표 1. 한국인 기부참여율 (단위:%)

연도	참여율
2013	34.6
2015	29.9
2017	26.7
2019	25.6
2021	21.6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1.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 오케스트라 용산역 공연

(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이러한 기부금과 관련된 규제 위주의 환경 속에서도 기부 활성화를 명칭으로 하는 법률이 유이(有二)하게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이다(나

머지 하나는 푸드뱅크를 배경으로 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및 지원, 후원우수기관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프랑스의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을 벤치마킹했는데 프랑스는 “메세나법”의 시행 후 수년 만에 문화예술분야 기업기부금이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 현황

우리나라도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초기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유수의 대기업들이 후원우수기업인증에 참여하고 실제 후원규모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표 2. 후원우수기관 신규인증 기업수

(단위:개)

연도	기업수	예시
2015	9	두산, 효성, 신세계 등
2016	13	KT, POSCO, GS칼텍스 등
2017	7	한화생명, 현대백화점 등
2018	5	파라다이스, 렉스나인 등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후원우수기업 신규 인증은 2016년 13개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3년의 유효기간 후 인증을 포기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후원 규모도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사회공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 중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년 12.7%에서 17년 21.6%까지 증가했으나 그 후 2020년에는 12.1%에 그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조사에서도 2013-14년에 1,700억 원 수준이던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금액은 2018-19년 2,05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21년

1,780억 원 규모로 원복 되었다(그림 1). 상승세에는 평창올림픽, 하락세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규모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이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결국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의 내용과 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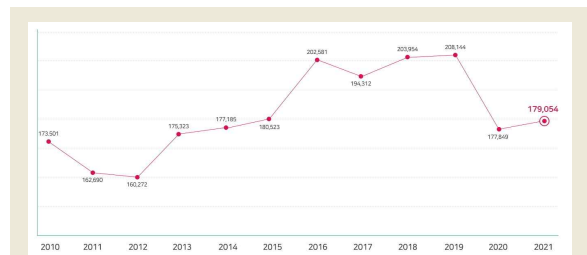


그림 2. 2010-2021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금액
(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 2023년 기부금품 제도의 주요 이슈

2023년, 기부활성화 영역에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하는 세계 기부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7위이다.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작은 우리나라의 한정된 기부규모에서(2015년 복지부 나눔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부규모는 GDP의 0.77%에 불과하다) 법률의 근거를 가진 새로운 분야의 등장은 기존 분야의 위기를 의미한다.

아직은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연 500만원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이 기부금의 최대 강점은 금전적 인센티브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어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만원 상당의 고향특산물을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이 기부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의 후원활성화법에도 조세 감면 조항은 있다. 제9조에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고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른 분야와 동일하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라는 거창한 법률의 명칭에 비해 실속은 없는 셈이다.

2023년, 없던 게 생겨도 모자를 문화예술 기부영역에 있던 게 없어진다.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다. 예술위는 기부자가 사용처로 예술단체의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부(지정)기부금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법정기부금단체이다. 그러나 2017년 정부는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 지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고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단체가 사라지게 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가 각 50%, 10%인 차이점을 가진다.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은 동일하다. 기업의 지출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인 현실에서 이 한도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개정 이유였으나, 문화예술분야에서 법정기부금단체의 존재는 단지 세제혜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법정기부금단체를 통한 기부 처리는 기부의 걸림돌 중 하나인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징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은 2014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려운 한자어인 ‘영전’에 한자어를 병기하여 ‘영전(榮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8년

동안 실질적인 개정, 후속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제9조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제정 시에는 기업의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하고 최근 이동주 의원은 예술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법률 제정 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조세감면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

정치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개인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도 장기적으로 시도해볼만 하다.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K콘텐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정부 정책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민간 법정기부금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은 다수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해서 다수의 예술단체에게 배분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대한 조항(제8조)을 담고 있다. 그 지원을 강화하여 기반을 마련한 후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면 그 혜택으로 감소되는 정부 세수보다 기부금이 훨씬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그 연구가 10년 전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발의 당시의 결과였으니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지금은 그 증가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증가된 기부금은 기부자(기업)와 예술가(단체)의 정기적 결연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매년 심사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창작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펀딩의 폭발적 증가와 성공사례는 이름 없는 관람객에서 적극적 후원인

으로 변화하는, 나를 드러내는 시대가 문화예술분야에도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좋은 문화예술을 정부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과 국민과 기업이 본인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것의 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의 과거의 한계이고 현재에 제기하는 화두이며 미래의 돌파구가 아닐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2018.10.4.),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기획재정부(2017.8.2.), [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김희근(2022.10.28.), '[기고] 문화예술 후원 늘려면 '메세나법' 개정부터', 「매일경제」.

이충관(2014.6.26.), '메세나법, 그 중요성과 기대 효과는?', 예술경영웹진, 264호.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2021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문화복지공동모금회 설립방안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상실에 따른 법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 개선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2022),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 서울: 한국메세나협회.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202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의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제승 jslee@arko.or.kr
ACKIS브리핑 발행일 2022.12.06.

#기부금품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법정기부금단체 #기업사회공헌